

심 사 보 고 서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9
----------	-----

2016. 5. 4.(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6년 4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4월 27일

-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상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충주시에서 구)충주의료원을 공원형 주차장 조성 등 공공 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재산과 교환을 충청북도에 요청하였으며,
- 충청북도는 구)충주의료원에 대해 도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건물 노후화 가속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주시유림 교환 취득》

- 위 치 : 충주시 용탄동 산33-1
- 취득시기 : 2016. 5. ~ 2016. 6.
- 취득규모 : 임야 2,154,735m²
- 재산가액 : 7,175백만원
- 취득사유 : 보존용재산인 보존림과 산림경영용으로 활용

□ 재산의 처분

《구)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 위 치 :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등 7필지
- 처분시기 : 2016. 5. ~ 2016. 6.
- 처분규모 : 부지 14,398.00m², 건물 10,680.68m²
- 재산가액 : 7,560백만원
- 처분사유 : 구)충주의료원 도유재산과 충주시유재산의 교환

3. 검토보고 요지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소유 구)충주의료원 부지와 충주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구)충주의료원은 2012년 안림동으로 이전하면서 비게 되었으며 아파트 건립이 추진됐지만 무산되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왔음.
- 충주의료원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고 지역상권이 위축되었는데 충주시가 도 소유의 부지를 매입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359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4월 14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359 호
----------	---------

제출연월일 : 2016년 4월1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주시에서 구)충주의료원을 공원형 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시유재산과 교환 요청
- 구)충주의료원에 대해 도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건물 노후화 가속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처분이 필요하여 구)충주의료원 도유재산과 충주시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주시유림 교환 취득》

- 위 치 : 충주시 용탄동 산33-1
- 취득시기 : 2016. 5. ~ 2016. 6.
- 취득규모 : 임야 2,154,735㎡
- 재산가액 : 7,175백만원
- 취득사유 : 보존용재산인 보존림과 산림경영용으로 활용

□ 재산의 처분

《구)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 위 치 :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등 7필지
- 처분시기 : 2016. 5. ~ 2016. 6.
- 처분규모 : 부지 14,398.00㎡, 건물 10,680.68㎡
- 재산가액 : 7,560백만원
- 처분사유 : 구)충주의료원 도유재산과 충주시유재산의 교환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